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66
----------	-----

2021. 3. 23.(화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나. 발의일자: 2021년 3월 3일

다.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: 2021년 3월 15일

(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국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어린이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배움의 과정으로 행복감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놀이시간이 부족한 상태임. 이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실태조사(안 제5조)
- 위원회 설치, 구성, 회의 운영(안 제6조~제8조)
- 학교의 지원(안 제9조)
- 교사 연수(안 제10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- 시행규칙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홍만표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,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,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6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, 안 제7조와 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교사연수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, (가칭)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내에 놀이공간을 설치하고,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 놀이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,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.
2. “학교”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(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놀 권리”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휴식,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,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
2.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방안
3. 놀이시설 및 공간, 놀이시간 확보 방안
4.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방안
5.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방안
6. 놀이 관련 동아리, 연구회 등 지원 방안
7.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
8.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
③ 학교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
3.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
5.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유치원, 초등교육 전문가

2. 유치원, 초등학교 교사

3.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

4. 그 밖에 어린이 놀이문화·놀이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학교의 지원)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사 연수) 교육감은 교사의 놀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

[발효일 1991. 12. 20] [다자조약, 제1072호, 1991. 12. 23]

제31조

1.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.
2. 당사국은 문화적·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, 문화, 예술,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□ 아동복지법

[시행 2020. 10. 8.] [법률 제17206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6. 3. 22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0. 10. 20.] [법률 제17496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0. 11. 27.] [법률 제17311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“유아”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

4. 삭제 <2012. 3. 21.>

5. 삭제 <2012. 3. 21.>

6. “방과후 과정”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및 놀이교육 교원전문성 강화
- 놀이시설, 공간, 시간 확보 지원
-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놀이문화 공감대 확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